

## 3.1.2 기획위원회규정

제정 1995. 12. 09.  
개정 2009. 09. 07.  
개정 2018. 03. 14.  
개정 2020. 03. 31.  
개정 2020. 05. 29.  
개정 2024. 12. 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12.04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수립, 평가, 개선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>
2. 학사제도 및 학사발전의 주기적인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>
3.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>
4. 학제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>
5.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 대한 심의 사항
6.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>
7.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>
8. 삭제 <2024.12.04.>
9. 예산편성운영지침 심의
10. 구성원 의견수렴 및 처리결과 검토 <개정 2020.05.29.>
11. 학과 평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5.29.>
1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신설 2020.05.29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기획연구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03.14>
-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개정 2018.03.14>

제4조(임기)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3.14>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전문위원)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자문위원)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및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연구비와 여비)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연구보조비를, 자문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4.12.04.>

제9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연구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8.03.14>

제10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